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0. . .
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대상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삭제하여 교육청 예산과 시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대상에 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’를 삭제함.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1조 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.	제41조 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	제41조 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,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	1. ~ 8. (현행과 같음)	1. ~ 8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수해 대상자		
3. 삭제		
4. 천재지변		
5.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		
6.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		

7. 삭제 8. 공동주택으로 주거 량기만 있고 관리인 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 를 수행하는 공동주 택의 경우(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은 해당되지 않는 다)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 8호의 규정에 해당하 는 감면 및 지원의 기 준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.	9.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10. 「초·중등교육 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1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 히 감면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- ----- -----지원 기준은 -----.	9.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 10. (개정안 제11호 와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--	--	--